

# 감정평가서

건명	이명자 소유물건(2025타경31432)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김태수
감정평가서번호	YT2506-044경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을태감정평가사사무소



#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최지혜

(인)

감정평가액	이천오십오만이천원정(W20,552,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김태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명자 (2025타경31432)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02	2025.06.24 ~ 2025.07.02	2025.07.03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734	토지	734	-	20,552,000
		이	하	여	백	
	합계					W20,55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평가는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소재 '용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 2.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면적 (㎡)	2025 개별 공시지가(원/㎡)	비고
1	고령군 쌍림면 용리	671	전	계획관리지역	전 및 묘지	734	16,900	

#### 3. 적용법률 및 감정평가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과 일반감정평가이론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기준가치 및 결정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본 감정평가는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5.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 1)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7월 2일임.

###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는 2025년 6월 24일, 7월 2일에 수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제반 가격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6. 감정평가방법 선정 및 적용

#### 1)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 (1)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산정하였음.

##### (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산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7. 기타사항

- 1)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법상 제한사항 등은 귀 의뢰목록,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였음.
-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토지와 일괄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일괄 평가하였음.
- 3)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전(휴경지) 및 묘지' 등이며,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등과 같이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II. 감정평가방법 및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방법 선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 (1)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절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산정하였음.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식>

$$\text{토지단가} = \text{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 \times \text{그 밖의 요인 보정}$$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2) 적용공시지가 선택

#### 가) 적용공시지가 선택기준

##### □ 감정평가 실무기준

###### 【610-1.5.2.2】적용공시지가의 선택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는 기준시점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을 선택한다. 다만, 감정평가시점이 공시지가 공고일 이후이고 기준시점이 공시기준일과 공시지가 공고일 사이인 경우에는 기준시점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적용공시지가 선택

본건 감정평가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기준시점인 2025.07.02.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인 2025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공시지가로 선택함.

### (3) 비교표준지 선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 감정평가 실무기준

###### 【610-1.5.2.1】비교표준지의 선정

① 비교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나)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위 기준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주변환경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아래 표준지를 선정함.

( 2025. 1. 1. 기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쌍림면 용리 755	1,111	전	전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900	-

###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표준지의 공시기준일과 대상토지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기준일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절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경상북도 고령군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을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여 일할 계산함.

(출처 : KAPA, KAIS, R-one)

용도지역	기 간	시점수정치	비 고
계획관리지역	2025. 01. 01 ~ 2025. 07. 02	1.00541	경상북도 고령군 (25.01.01~25.07.02 ) (계획관리)  2025.01.01 ~ 2025.05.31 : 0.466 2025.05.01 ~ 2025.05.31 : 0.072  $( 1 + 0.00466 ) * ( 1 + 0.00072 * 32/31 )$ $\approx 1.0054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5)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지리적으로 인근에 소재하고 가치형성에 있어 상호 대체 및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 (6) 개별요인 비교

####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 <농경지대>

개별요인	항 목	세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토양, 토질 등	일조, 통풍,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 및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 및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 경사의 방향 등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나) 개별요인비교치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 및 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대상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합 계
1	A	-	0.88	1.00	0.90	1.00	0.95	0.752
본건은 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등), 기타조건(분묘 등)에서 열세함.								

### (7)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 ④ 개념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를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1993.09.10 선고 92누 16300, 2004.05.14 선고 2003다 38207) 등의 취지에 따라, 시장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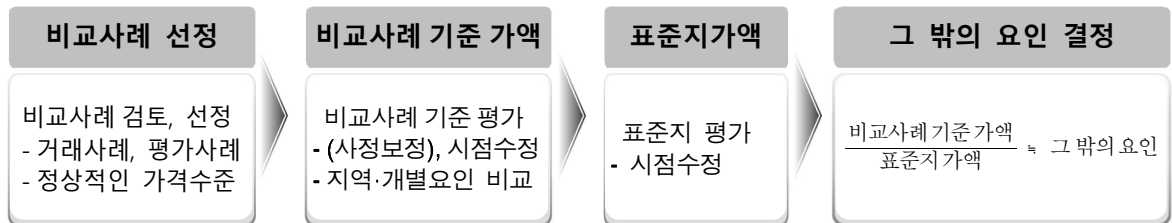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② 산정방법

대상토지와 대체·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토지의 정상적인 시장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이 큰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와의 가격 수준과의 차이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함.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과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격과의 격차율을 검토하여 산정하되 인근지역의 거래가능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과정>



- 평가사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 = 평가사례(거래사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공시지가 × 시점수정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나) 비교사례 선정

#### ① 비교사례 선정기준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그 밖의 요인 보정

- 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4.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② 비교사례 선정

### ㄱ.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면적 (㎡)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1	쌍림면 용리 18*~*	전	계획관리	602	49,000	2023.07.10	경매	-
2	쌍림면 고곡리 89*	전	계획관리	721	44,000	2021.08.12	공매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ㄴ. 실거래사례

(출처 :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면적(m <sup>2</sup> )	건물면적(m <sup>2</sup> )	거래금액(원)	토지단가(원/m <sup>2</sup> )	거래시점	비고
3	쌍림면 용리 65*~*	답	계획관리	486	-	14,700,000	30,246	2023.12.08	
4	쌍림면 용리 90*~*	답	계획관리	2116	-	80,000,000	37,807	2023.04.03	
5	쌍림면 고곡리 6*	전	계획관리	1226	-	58,000,000	47,308	2022.10.31	

※ 거래사례(3),(4),(5) :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ㄷ. 사례선정

비교사례는 위 기준에 의거하여 인근지역에 소재한 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주변환경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사례로서 당해지역의 정상적인 지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의 평가사례#1을 선정함.

표준지	선정 사례
A	평가사례 #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 ① 평가사례(거래사례)에 의한 보정치 산정

비교 표준지 (A)	기준시점현재 표준지가격(a)	공시지가	시점수정				기준시점현재 표준지가격
		16,900	1.00541				16,991
	선례기준 표준지가격(b)	선례	사정 보정 <sup>(1)</sup>	시점 수정치 <sup>(2)</sup>	지역 요인 <sup>(3)</sup>	개별 요인 <sup>(4)</sup>	선례기준 표준지가격
		49,000	1.00	1.01718	1.00	0.740	36,883
	보정치	보정치산정(b/a)					
36,883 / 16,991 = 2.171							

\* (1) 사정보정 : 사정보정요인 없음. (1.00)

\* (2) 시점수정(경상북도 고령군 계획관리지역 23.07.10~25.07.02) : 1.01718

\* (3) 지역요인 :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 (4) 개별요인(선례 대비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 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소계
-	0.85	1.00	0.87	1.00	1.00	0.740
표준지(A)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와 같이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지가액과 기준시점으로 수정된 표준지가액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건과 비교가능한 평가선례 및 지가수준과 최근 부동산 경기의 추세 및 전반적인 경기상황 등으로 보아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지가수준이 공시지가수준과 괴리되어 현실가격의 반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계산된 격차율과 부동산 시장 동향, 인근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정치를 **비교표준지(A) : 2.17** 으로 결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상기사항을 제반 참작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기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16,900	1.00541	1.00	0.752	2.17	27,727	28,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 (1)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절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산정하였음.

$$\begin{array}{|c|} \hline \text{토지단가} \\ \text{(원/㎡)}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거래사례} \\ \text{토지단가}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사정보정}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시점수정}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지역요인} \\ \text{비교}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개별요인} \\ \text{비교} \\ \hline \end{array}$$

#### (2) 거래사례 선정

##### 가) 거래사례 선정기준

###### □ 감정평가 실무기준

###### 【610-1.5.3.1】거래사례의 선정

① 거래사례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가격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격을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거래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2.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3.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4.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5. [610-1.5.2.1]에 따른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나)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할 거래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으로 인정되며, 거래시점이 3년 또는 5년 이내(도시지역 내 3년, 그 외 5년) 거래된 사례로서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며,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주변환경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래의 **거래사례#4**를 선정함.

(자료: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면적(m <sup>2</sup> )	건물면적(m <sup>2</sup> )	거래금액(원)	토지단가(원/m <sup>2</sup> )	거래시점	비고
4	쌍림면 용리 90*-*	답	계획관리	2116	-	80,000,000	37,807	2023. 04.03	

###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상화시키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본 거래사례는 인근지역 내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의 가격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검토할 때 거래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지므로 별도의 사정보정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토지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시점의 거래사례 가격수준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절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한 거래사례 소재 경상북도 고령군 계획관리지역의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누계를 적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출처 : KAPA, KAIS, R-one)

용도지역	기 간	시점수정치	비 고
계획관리지역	2023.04.03 ~ 2025.07.02	1.01539	경상북도 고령군 (23.04.03~25.07.02 ) (계획관리)  2023.04.01 ~ 2023.04.30 : -0.359 2023.05.01 ~ 2023.05.31 : 0.104 2023.06.01 ~ 2023.06.30 : 0.036 2023.07.01 ~ 2023.07.31 : 0.068 2023.08.01 ~ 2023.08.31 : 0.147 2023.09.01 ~ 2023.09.30 : -0.009 2023.10.01 ~ 2023.10.31 : 0.064 2023.11.01 ~ 2023.11.30 : 0.060 2023.12.01 ~ 2023.12.31 : 0.033 2024.01.01 ~ 2024.12.31 : 0.824 2025.01.01 ~ 2025.05.31 : 0.466 2025.05.01 ~ 2025.05.31 : 0.072  $( 1 - 0.00359 * 28/30 ) * ( 1 + 0.00104 ) * ( 1 + 0.00036 ) * ( 1 + 0.00068 ) * ( 1 + 0.00147 ) * ( 1 - 0.00009 ) * ( 1 + 0.00064 ) * ( 1 + 0.00060 ) * ( 1 + 0.00033 ) * ( 1 + 0.00824 ) * ( 1 + 0.00466 ) * ( 1 + 0.00072 * 32/31 )$ $\approx 1.01539$

※ 2025년 6월 이후 자가변동률은 평가시점 현재 미발표 상태로서 직전 월의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여 일할 계산함

### (5)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와 지리적으로 인근에 소재하고 가치형성에 있어 상호 대체 및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요인은 대체로 대등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6) 개별요인 비교

거래사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 및 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사례 (기호)	대상토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합 계
4	1	-	0.80	1.00	0.90	1.00	0.95	0.684
		본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획지조건(경사도 및 경작의 편부 등), 기타조건(분묘 등)에서 열세함.						

###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위 사항을 제반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일련 번호	사례	사례단가 (원/m <sup>2</sup> )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m <sup>2</sup> )	결정단가 (원/m <sup>2</sup> )
1	4	37,807	1.00	1.01539	1.00	0.684	26,258	2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2. 토지가액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은 시장상황을 반영한 균형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범주 내에 속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결정함.

구 분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sup>2</sup> )	면적 (m <sup>2</sup> )	토지가액 (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28,000	734	20,552,0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26,000	734	19,084,000
토지가액 결정	<b><u>20,552,000</u></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Ⅲ.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일련 번호	단가 (원/m <sup>2</sup> )	면적 (m <sup>2</sup> )	금액 (원)	비고
토지 감정평가액	1	28,000	734	20,552,000	
감정평가액 결정(원)	<u>20,552,000</u>				

####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 토지 가격은 대상물건의 제반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 검토하고 거래시세 및 호가수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였는바 그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음.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671	전	계획관리지역	734	734	28,000	20,552,000	분묘소재 감안평가
<b>합 계</b>								<b>₩20,552,000.-</b>	
				이	하	여	백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소재 '용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환경은 보통임.

## 2. 교통상황

본건 남서측 인근까지 소형 농기계 출입 가능하며, 지적도상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 해당도로를 통한 접근은 원활치 않은 상태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비교적 불편한 편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전(휴경지) 및 분묘'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서측으로 폭 약2~3미터 도로와 접하나, 현황 해당도로를 통하여 접근은 원활치 않으며 남서측 농로 등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등과 같이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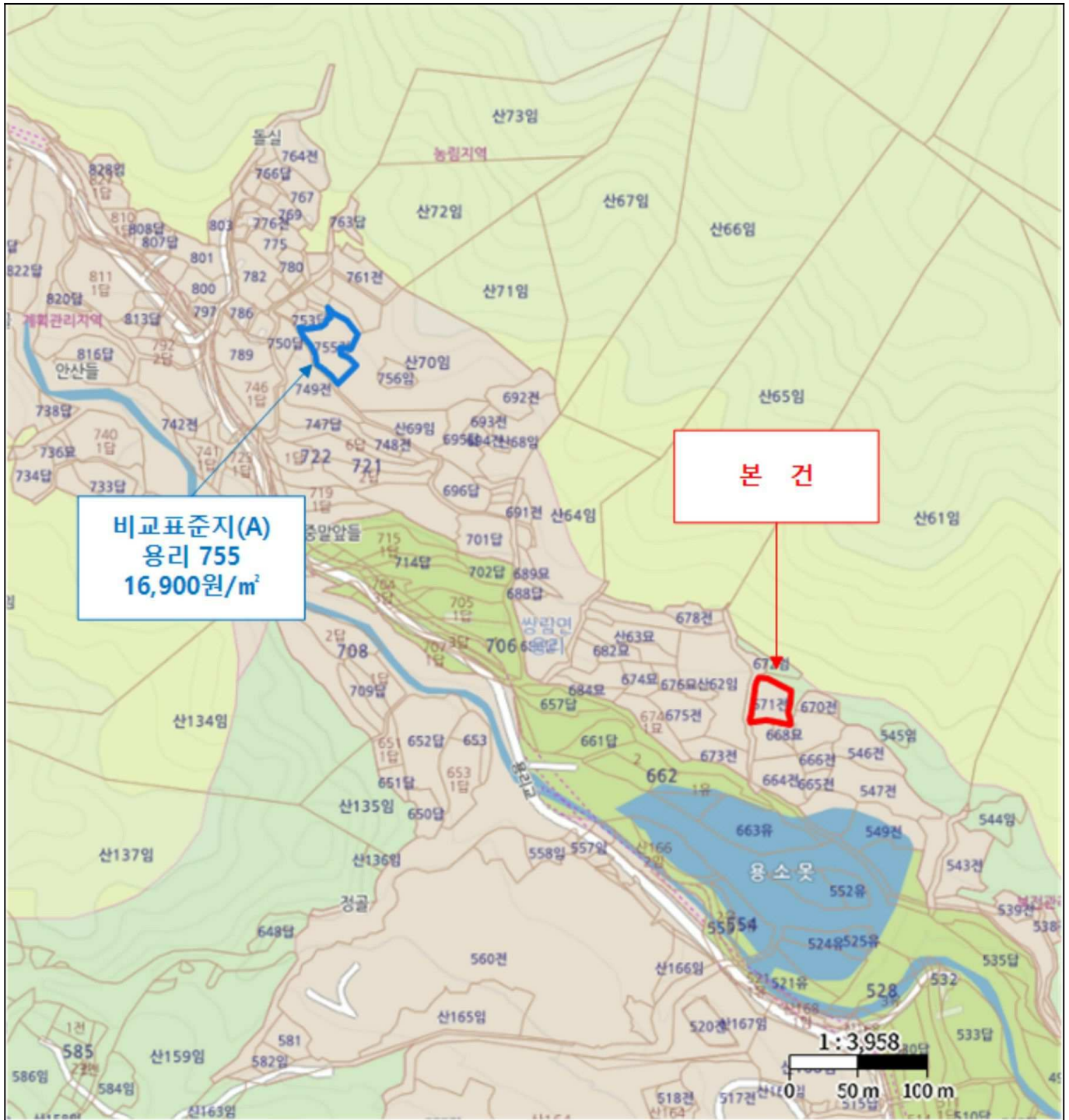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67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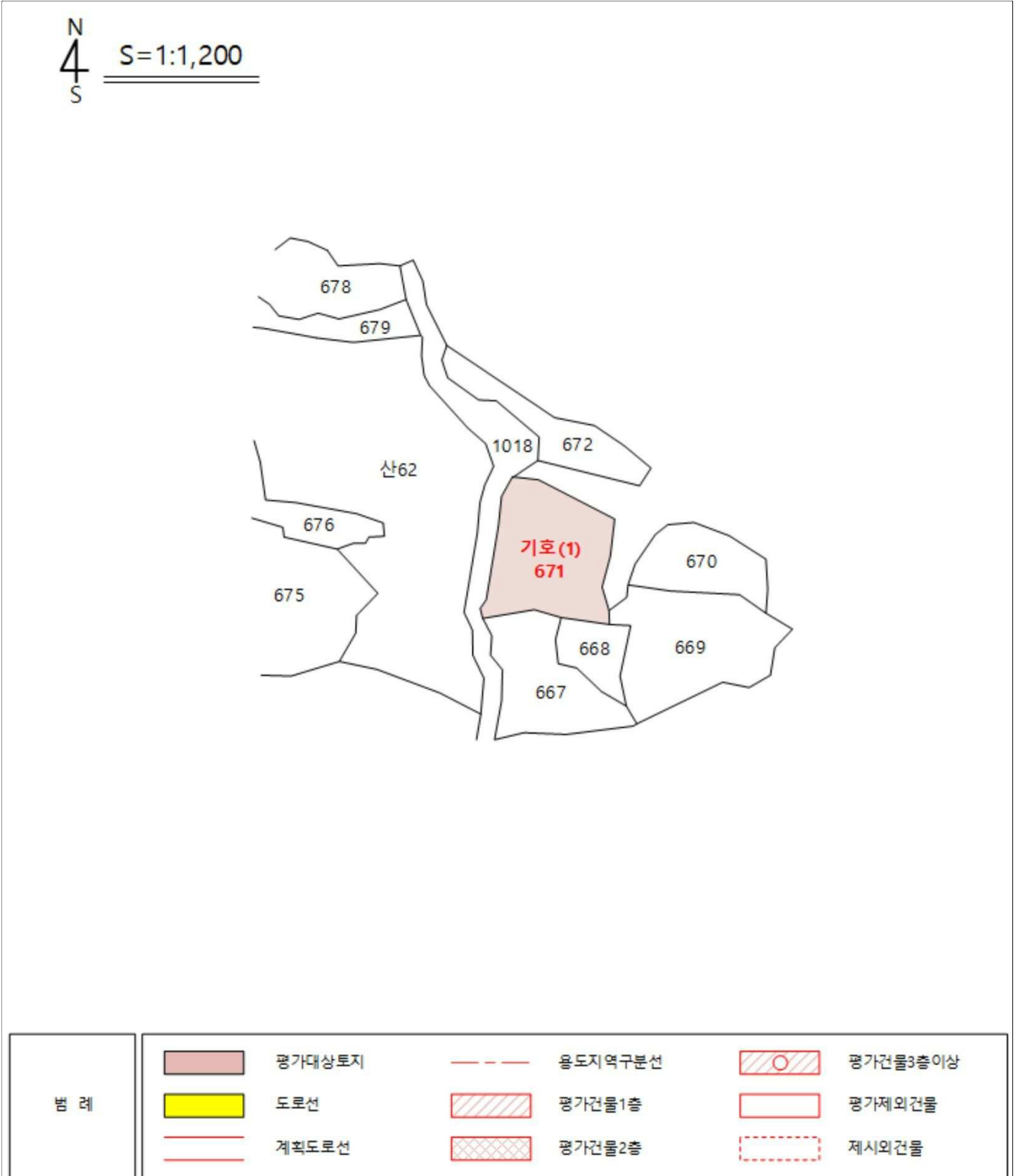
#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671
-----	---------------------



# 지 적 도







( )

